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처분을 받은 이후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한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취소 또는 금지 처분 이후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2. 제16조에 따라 승인 갱신이 거부되거나 승인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살생물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지 않거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기간 이후에도 해당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4.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5. 제28조에 따라 허가 갱신이 거부되거나 허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지 않거나 회수, 폐기 등의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조치 기간 이후에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8. 제45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또는 응급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46조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제21조제5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 부여를 취소받거나 승인신청계획서에 따른 자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승인신청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판매한 해당 살생물제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5장 보칙

제48조(이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확인의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제15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적동등성 평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7.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27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9. 제28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허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간소화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3.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의 명령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6.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17. 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제49조(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 받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제품명, 처분 내용 등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0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정보망(이하 “생활화학제품관리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있다.

1.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2.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 평가 자료 작성에 관한 정보

3. 기존살생물질에 관한 정보

4. 제22조에 따른 살생물질의 목록에 관한 정보

5. 대체후보 살생물질에 관한 정보

6. 허가를 받은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7. 살생물처리제품에 관한 정보

8. 제49조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

9.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자료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0.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살생물질의 승인 신청, 제20조에 따른 기존 살생물질의 신고,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살생물제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관리정보망, 살생물제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과정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 감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와 관련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및 관련 학계,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에 필요한 평가 등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제5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업무

2. 위해성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4. 살생물질의 승인 및 승인 갱신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및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5. 살생물질의 기술적 동등성 평가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6. 살생물제품의 허가 및 허가 갱신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및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③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기록 및 보고)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성분 및 배합비, 살생물질의 명칭과 수량,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매년 위해우려물질, 살생물질의 명칭과 양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무상수거 및 보유하고 있는 평가 관련 자료의 열람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질·살생물질·제품·용기·포장 등의 무상수거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의 열람 및 무상수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질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질 승인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동등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허가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간소화된 허가 신청을 하려는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자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11.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12.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금지의 처분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4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번호를 부여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확인의 취소 또는 제조·수입의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않은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보이용동의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7.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질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8.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살생물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9. 제19조를 위반하여 승인취소 또는 환경부장관의 제한 처분을 따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르지 않은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한 자

1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보이용동의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13.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14. 제32조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또는 환경부장관의 제한 처분을 따르지 않은 자

15.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 판매금지, 폐기 또는 응급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16. 제45조제3항 후단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않거나 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19. 제5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검사번호를 부여한 자

20.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않거나 보존 중인 장부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폐기한 자

2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반복적으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갱신을 신청하고 살생물질의 승인 갱신을 받은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동등성 평가 자료를 거짓 또는 부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기술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질의 승인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변경을 받은 자

6.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신청계획서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살생물제품의 허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갱신을 신청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자

9.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살생물제품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자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의 허가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변경을 받은 자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자

1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이용동의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

13. 제42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14. 제54조를 위반하여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해당 업무를 계속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살생물제품의 표시와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와 사용설명서를 제공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를 한 자
3.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자
7.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별 및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표시한 자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8. 제41조를 위반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를 위반하여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 제5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적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6.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5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은 위해우려제품은 이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험·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확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살생물제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조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기존살생물질로 고시되지 않거나 기존살생물질의 평가 결과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기존살생물질의 승인유예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살생물제품을 계속해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26조,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조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 중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기존살생물질로 고시되지 않거나 기존살생물질의 평가 결과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은 기존살생물질의 승인유예기간으로 한다.

제6조(시장에 판매된 살생물제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 시장에 이미 판매되어 유통 중인 살생물제의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 T/F)	
연 락 처	044-201-6806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01-04 10:53:50